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8303    |
| 의 퇴 인 | 남인순 의원     |
| 회 답 일 | 2025.3.26. |
| 추계번호  | 25C0981    |

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79조의2<br>(국유·공유 재산<br>의 무상 대부) | (제1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음<br>(제2항)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79조의2<br>(국유·공유 재산<br>의 무상 대부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<sup>1)</sup>의 설치·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·공유재산의 대부료·사용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을 위해 제공할 재산의 종류와 해당 재산의 대부료·사용료 수입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음
  - 현행법은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개정안은 해당 기관의 확대를 위해 국·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것이 취지임
-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국·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하게 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, 관련 추계 시 필요한 정보, 즉 해당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·수익 여부 및 지원 규모, 지원 기간,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 및 내용, 해당 기관의 설치·운영 지역 등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 - 또한, 해당 기관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“정신질환자등”이라 한다)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므로, 개정안에 대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총 359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, 정신요양시설은 총 59개로 파악됨

- 참고로,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(2021~2025)에 따르면 지역별 정신질환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수요-공급 현황을 분석하고, 정신재활 시설 유형별·연차별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
  - 보건복지부는 “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” 사업(2024년 예산 기준 126억 8,500만원)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시설·정신요양시설·정신재활시설·정신의료 기관 확충 및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있음

### Ⅲ. 부대의견

- 없음

### Ⅳ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강시온 | 이진우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|
| 강시온 | 02-6788-4742 | sionkang@nabo.go.kr |